



USDA 농촌 진흥청에서는 차별 금지 책임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나요?

USDA 농촌 진흥청은 귀하의 프로그램 및 활동이 시민권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에 대한 검토를 주기적으로 수행합니다. USDA 농촌 진흥청은 대중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 귀하의 파트너입니다.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따라야 하는 연방 시민권법은 무엇인가요?

수령자가 따라야 할 해당되는 연방 시민권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연방 시민권법

법령	다음에 기반으로 한 차별 금지	미국법전
평등신용 기회법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결혼 여부, 나이	15 USC 1691
공평주거권리법 (1968년 시민권법 제8장)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가족 현황, 장애 유무	42 USC 3601
1964년 시민권법 제6장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42 USC 2000d-2000d-7
1973년 재활법 섹션 504	장애	29 USC 794
1974년 주거 및 지역 사회 개발법 제1장의 109항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종교	42 USC 3535d
개정된 1990년 미국장애인법 제2장 및 제3장	장애	42 USC 12101 및 12181
개정된 1975년 연령 차별 금지법	나이	42 USC 6101 이하 참조
1972년 교육개정법 제9장	성별	20 USC 1681-1688

UpstateNYer 님의 표지 사진.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

자세한 정보는 USDA 농촌 진흥청 시민권 사무실로 문의하십시오.

rd.usda.gov/about-rd/offices/civil-rights

1 (800) 787-8821(무료 전화)

1 (800) 877-8339(연방 중계)

RA.RD.MOSTL.CivilRights@usda.gov

시민권 요건 준수하기

USDA 농촌 진흥청 파트너로서 귀하의 책임

함께 번영하는 미국



USDA는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제공업체, 고용주이자 대출 기관입니다.

PA-2206 | 2020년 9월

연방 시민권법은 누가 준수해야 하나요?

USDA 농촌 진흥청으로부터 대출 또는 보조금 등의 연방 자금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 연방 시민권법을 준수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든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또는 혜택에서 제외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적이거나 차별적인 행위에 대해 불만 사항을 접수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복을 가하면 안 됩니다.

이 가이드는 연방법에서 다루는 기준에 따라 공공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하는 데 차별이 없음을 보장하는 귀하의 책임에 대한 기본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 나이 및 장애 유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따라야 할 해당 시민권법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연방 자금 또는 지원"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연방 자금 또는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보조금, 간접 보조금, 협력 계약, 문제 제기 비용분담협정, 비용보상형 계약 또는 대출을 통해 주어진 연방 자금
- 연방 기관에서 진행한 교육
- 연방 인사의 대출 또는 임시 근무(예: USDA 농촌 진흥청 직원이 지역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 시장 가치 이하의 연방 시설 대여 또는 사용

저희는 연방 자금 및 지원 수령자인가요?

귀하가 제공하는 공공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USDA 농촌 진흥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직접 또는 다른 수령자를 통해 연방 자금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 "수령자"에 해당됩니다. 수령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연방 자금 또는 지원을 받는 개인
- 주 또는 지방 정부
-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 개인, 부족, 기업 또는 조직
- 대학교, 비영리 기관 등 공공 또는 민영 기관, 협회 또는 조직

연방 시민권법을 준수하는 데 대한 저희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USDA 농촌 진흥청의 파트너로서 연방 시민권법을 준수할 귀하의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시민권법을 준수한다고 입증하는 보증을 체결합니다. 간접 수령자가 있는 경우, 간접 수령자가 체결한 보증을 획득합니다.
- 공공 리셉션 장소 또는 공개적으로 보이는 기타 장소에 미국 농무부 포스터 “And Justice for All”(AD-475A 지원 포스터)을 표시합니다. USDA 농촌 진흥청에 연락하여 복사본을 얻습니다.
- 차별 금지와 간행물 및 홍보 자료에서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한 다음의 진술을 포함합니다.

프로그램 차별 불만 사항을 제출하려면 http://www.ascr.usda.gov/complaint_filing_cust.html 또는 USDA 사무소에서 얻을 수 있는 USDA 프로그램 차별 불만 사항 양식(USDA Program Discrimination Complaint Form AD-3027)을 작성하거나 양식에서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서신으로 USDA에 보내십시오. 서식 사본은 (866) 632-9992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서식 또는 서신은 해당 링크로 USDA에 제출해 주십시오.

우편물: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팩스: (833) 256-1665 | (202) 690-7442 또는

이메일: program.intake@usda.gov.

- 간행물이나 자료가 진술 전체의 사용을 허가하기에 너무 작은 경우, 다음 진술을 텍스트 크기보다 작지 않은 인쇄 크기로 포함하십시오.

이 기관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귀하의 간행물 및 홍보 자료가 대출이나 보조금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USDA 농촌 진흥청과의 제휴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십시오.

이 간행물은 USDA 농촌 진흥청의 보조금을 받아 제공됩니다.

-또는-

이 프로젝트는 USDA 농촌 진흥청과의 협업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고객 기반에 적합하도록 장애인을 위해 프로그램 정보를 다른 유형으로,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다른 언어로 제공합니다.

- 귀하의 프로그램이 시민권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을 파악합니다.

- 귀하의 모든 정책, 절차 및 관행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나이, 장애 유무 또는 성별(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따라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 귀하의 프로그램 및 시설의 접근성을 평가합니다. 현재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전환 계획을 개발한 후, 적절하게 계획을 수행합니다.

- 귀하의 직원이 USDA 불만 사항 접수 과정에서의 역할을 포함하여 시민권 책임을 이해하도록 지원합니다.

- 프로그램을 광고하거나 마케팅하는 경우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커뮤니티에 봉사를 제공합니다.

- 프로그램 및 활동의 참여자를 위한 봉사에 대해 농촌 진흥청에 정보를 제공합니다.